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수도시설 중에서 정수지나 배수지의 방수·방식 공사 시 수돗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부 들뜸 현상 등의 하자로 인해 재시공이 요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방수·방식 공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, 감리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더불어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여 감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정수지·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,

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·방식 공사의 경우 시공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